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고*

-일본의 「환경배려촉진법」을 중심으로-

한 귀 현*

차 례

- I. 서 설
-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고의 기능
 - 1. 환경정보흐름의 변용과 환경정보의 특색
 - 2.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3. 환경보고(서)의 기능
- III. 「환경배려촉진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1. 서
 - 2. 제정배경
 - 3. 주요내용
- IV. 우리나라 환경법제에 있어서 환경보고제도
 - 1. 개 설
 - 2. 녹색기업지정의 대상 및 절차 등
 - 3. 환경정보공개(환경보고)의무 및 환경정보의 검증
- V. 결 어

* 이 논문은 2012년도 순천대학교 학술기반조성비로 연구되었음.

** 순천대 법학과 부교수

접수일자 : 2012. 4. 30 / 심사일자 : 2012. 6. 18 / 게재확정일자 : 2012. 6. 22

I. 서 설

지구온난화, 폐기물·리사이클문제, 유해화학물질문제 등과 같은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세계경제의 발전이나 인구의 증대에 의해 여러 형태에서 환경의 부하수용능력이 상실되어 가는 한편에서,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일상생활이나 통상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가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고,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대로는 환경부하가 더욱더 증가하여 현재의 경제사회시스템이 더욱더 엄한 환경상의 제약에 맞부딪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¹⁾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즉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환경이 좋아져 가는 것과 같은 관계(「환경과 경제의 선순환」)를 구축하여야 한다.

돌이켜보면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기업의 경제활동·기업활동의 소산이며, 외부불경제의 내부화를 도모함이 없이 사적 이익의 추구활동을 행해 온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는 사업활동에 기인하는 환경부하는 크고, 글로벌화에 의해 사업자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업활동이 환경에 주는 영향도 지구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사업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환경에 배려한 제품설계의 실시, 제품의 유통방식에 있어서의 고안 등에 의해 제조의 단계는 물론 소비나 폐기의 단계에 있어서의 환경부하의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현대에 있어서는 기업은 이제까지의 경제지상주의를 물리치고 환경부하의 저감에 배려하는 「환경조화형사회」 내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의 실현에 향하여 기업의 조직·활동의 본태를 재검토하여 지속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기업운영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²⁾ 최근에 들어 환경

1) 日本環境省 中央環境審議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方策の在り方について(意見具申)」, 2004. 2, 5頁 참조.

2) 吉川榮一, “環境リスクと企業に對する情報開示請求”, 「上智法學論集」 第52卷 1·2号, 2008, 144-145頁.

에 배려한 사업활동이 확대를 보이고 있음과 아울러, 사회나 시장의 측에서도 재무면 뿐만 아니라 환경면에서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기업과 사회(소비자, 투자가 등)간의 환경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최근 주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보고제도」이다. 환경보고(서)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고서에 의한 정보개시제도는 기업의 환경활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수단이 된다. 즉, 기업 환경정보의 개시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환경법상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환경보전활동·대응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그 부차적 효과로서 기업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동을 삼갈 뿐만 아니라, 개시내용과 합치된 환경행동을 행함으로써 사회의 신뢰·평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역학의 작용이 인정된다. 요컨대, 환경보고서에 의한 정보개시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기업평가자료로서의 수요에 관련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구적 규모의 환경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생산·소비구조로 전환하여 환경조화형의 문명을 재구축하는 것이 급무로 되고 있는 현재, 기업이 환경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그것 자체 공공성을 가지는 것이다.³⁾

한편, 일본에서는 「환경정보의 제공의 촉진 등에 의한 특정사업자 등의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77호, 이하에서는 「환경배려촉진법」이라 한다)이 2004년 6월 2일에 제정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사업활동에 관련한 환경의 보전에 관한 배려가 적절하게 행해지는 것을 확보」(동법 제1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른바 특정사업자 등에게 환경보고의무, 즉 환경보고서의 작성·공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⁴⁾ 그러나 동법 시행 후 3년을 경과한 시점에

3) 吉川榮一, 前掲論文, 147-148頁; 同人, 「企業環境法 第2版」, 上智大學出版會, 2005, 140頁.

4) 환경정보의 수집·형성에는 그것 자체 상응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경보고가 의무

있어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동법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부터 환경성내에서 재검토에 향한 검토가 행해지고⁵⁾ 2009년 3월에는 「환경배려촉진법의 시행상황의 평가·검토에 관한 보고서」가 공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환경배려촉진법」을 소재로 하여 그 시행상황에 주목하면서 환경보고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환경법제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워지는 경우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일본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보고가 의무지워져 있다. 즉,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한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산정·보고의무,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의 파악등 및 관리의 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일정한 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가동량의 파악·보고의무(PRTR제도) 및 동법 제14조에 의한 화학물질의 거래 시에 그 성상 및 취급에 관한 정보의 거래상대방에의 제공의무(MSDS제도),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에너지 사용상황 등의 보고의무,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식품폐기물 등의 발생량 및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상황의 정기보고의무, 「특정제품에 관련한 프레온류의 회수 및 파괴의 실시의 확보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프레온회수파괴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제1종프레온류회수업자의 프레온류의 회수량, 인도량, 재이용량 등의 도도부현지사예의 보고의무 및 동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프레온류파괴업자의 프레온류의 파괴량 등의 주무대신예의 보고의무, 그리고 「토양오염대책법」 제3조에 의한 소유자 등의 사용이 폐지된 유해물질사용특정시설에 관련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이었던 토지의 조사와 도도부현지사예의 보고의무 등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개별법에 의해 개시되는 환경정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부분적이다. 첫째로, 개시되는 정보는 개별법의 목적과 동법이 커버하는 범위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 둘째로, 3R 등 폐기물의 삭감, 절수, 생물다양성에의 배려와 같은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배려행동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의 개시가 불충분하다. 이것에 대하여 환경보고는 분야횡단적이고 또한 종합적인 환경정보의 제공과 그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越智敏裕, “環境配慮促進法の可能性 —大企業者に對する環境報告の義務付けについて—”, 「上智法學論集」第53卷 第1號, 2009, 4-8頁 참조.

5) 중앙환경심의회총합정책부회·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소위원회(좌장: 山本良一 동경대학 교수)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고의 기능

1. 환경정보흐름의 변용과 환경정보의 특색

(1) 환경정보흐름의 변용

정보의 유용성 및 그것에 의한 사회적 가치의 상승, 2면관계에서 3면관계로의 전환은 종래의 정보편재상황에도 변화를 미친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사업자 측에서 시민측에의 정보의 이행이다. 이것은 정보제공측에서 전략적·의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 점이 환경정보수법의 특색이자 그 형성요인이 되고 있다.⁶⁾

1) 고전적 규제의 기능부전

행정시책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2면관계에서 3면관계로 전환되고, 그것에 의해 판단·결정의 주체도 3면적인 구조가 요구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행정절차과정에서의 시민참가는 그러한 필요에 응하는 제도이다.⁷⁾ 이러한 제도구조에서는 각 주체간에 있어서 적절히 정보의 공유가 행해지는 것이 전제가 된다. 종래의 전통적인 경찰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하에서는 시책결정이나 규제에 필요한 정보는 인허가권자이자 규제주체인 행정이 오로지 수집·파악하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현대적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행정 1인이 주도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그것에 의한 기능부전의 우려도 있다. 행정만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보완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로 되었던 것이다.⁸⁾

6) 勢一智子, “環境情報の行政法的機能について —ドイツ環境法における情報のコントロール機能—”, 川上宏二郎先生古稀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情報社會の公法學』, 信山社, 2002, 241頁.

7) Vgl. E. Schink,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1992, S. 22 ff.

8) 환경정보와 규제의 관계, 즉 환경보고를 의무지우는 제도들은 그 제도목적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유형은 규제적 수법을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는 정보적 수법으로서 환경보고를 의무지워 대상자를 견제·유도하는 환경보고제도이다. 제2유형은 규제를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

2) 국가에서 시민에 향한 적극적 정보발신

종래 국가에 의한 시민에의 일반적인 정보제공은 은혜적으로 행해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하여 최근에는 행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의해 효과적·효율적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⁹⁾

이러한 정보제공은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지만, 그러나 행정은 영향력의 행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의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사실상의 컨트롤을 미치는 것이 의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정보공개법에 의한 환경정보에의 일반적인 액세스보장은 국가로부터 시민에의 정보의 흐름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시민의식의 향상에도 결부되는 점도 중요하다.¹⁰⁾

3) 소비자로서의 시민을 의식한 사업자활동

환경규제의 수범자이며 환경보호에 대립하는 이해를 가진 사업자도 최근 자신의 환경관련정보를 시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현대적 의의를 찾고 있다. 종래 사업이나 제품의 정보제시는 네거티브한 내용에 한하고 경찰규제의 일환으로서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포지티브한 환경정보를 제시하는 것에 의해 경제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다면, 환경정보의 제공은 기업전략과 일치한다. 시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환경친화적인 기업이미지는 시장에서 중요한 어드밴티지로 되는 것이다.

해 환경보고를 의무지우는 것으로, 규제적 수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환경보고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사업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안전마다의 구체적인 규제권한행사의 계기 내지 전제로서 환경정보가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끝으로, 제3유형은 적절한 정보를 유통시킴으로써 관계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보고제도이다. 요컨대, 제도목적은 주종은 별도로 하더라도 복수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유형은 중복 내지 융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越智敏裕, 前掲論文, 6-7頁 참조.

9) 시민일반에 대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정보의 제공을 통해 시민의 이해·협력을 얻는 것이며, 환경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계발 및 교육이다. 둘째, 행정에 의한 책무의 실현으로서 행해진다. 셋째, 환경에 배려하는 시민감정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환경보호에의 방향부여이다. 勢一智子, 前掲論文, 242頁.

10) 가령 독일에 있어서 국가에 의한 환경정보배려에 관해서는, Vgl. M. Kloepfer, Umweltrecht, 3. Aufl., 2004, S. 337 ff.

환경정보에 관해서는 사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자가 획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많다. 환경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원인자부담의 원칙(Verursacherprinzip)의 취지에서도 사업자에 대해 설명책임의 일환으로서 환경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4) 환경정보에 대한 시민의 요청

이와 같은 행정과 사업자의 쌍방으로부터의 정보흐름(Informationsfluss)의 강화는 시민측에서의 요청에도 합치한다. 생활자의 입장에서 환경보호는 중대한 관심사이며, 또한 주민으로서도 소비자로서도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이해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이 주체적이고 또한 일상적으로 환경정보에 액세스하는 것, 자신의 눈으로 체크할 수 있는 법제도와 사회시스템이 필요로 된다.

이상과 같은 배경하에 환경정보흐름은 각 주체의 의도와 이해의 일치에 의해 행정으로부터 시민으로 혹은 사업자로부터 시민으로 라는 3면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¹¹⁾

(2) 환경정보의 특색

1) 정보의 비대칭성의 시정

시민에 향해진 환경정보제공의 제도들은 시민에 대해 지식을 포함한 정보의 재배분을 실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용은 사회에 있어서 환경정보의 비대칭성의 시정에의 계기가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의 시정을 실현함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정보제공주체의 다양화이다. 확실히, 행정이 정보를 집약한 다음에 제공하는, 요컨대 정보의 중계점이 되는 것은 각 주체의 정보관련비용의 절약의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환경관련기술의 보급상황이나 사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업자에 의한 제품정보 등 정보보유자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야도 적지 않다. 또한 사

11)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勢一智子, 前掲論文, 241-243頁 참조.

업자를 포함하여 적절한 주체로부터 정보를 공개·제공하게 하는 쪽이 설명책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통상,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행위부담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기업경영전략과의 일치 등 사업자에 의한 정보제공을 도출하는 동기가 기능하고 있는 점이 정보제공원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있다.¹²⁾

2) 자율과 타율의 구조화

행정과 기업의 전략적 의도에 의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은, 그 반면 정보제공자에 대한 컨트롤로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정보제공을 통해 그 제공자가 사회의 눈에 띄게 되는 것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컨트롤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정보제공에 기인하여 사전에 환경배려적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하는 자주적 컨트롤이다. 환언하면, 이러한 환경정보제공형의 고안에는 단지 널리 사회에 정보를 제시하는 것 외에, 외부로부터의 감시에 의한 규제와 그것을 단서로 한 자기규제, 즉 타율과 자율이라는 2면컨트롤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¹³⁾

자율은 특히 사업자나 업계에 있어서 조기의 환경배려를 실현하는 것이다. 요컨대, 제품 등의 시장유통전의 단계에 작용하는 시스템은 생산설계단계에 환경보호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자원흐름의 상류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를 지향하는 사전배려의 원칙(Vorsorgeprinzip)의 요청과 일치하며, 게다가 외부불경제의 내부화에도 기여한다. 또한 자율은 업계내에서도, 예를들면 제품의 품질유지를 법적 규제에 의지함이 없이 업계주도에 의한 인증이나 감시 등 내부적인 자기컨트롤을 실현하는 움직임으로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리스크관리의 내부화에 결부되는 것이며, 행정의 감시임무의 민간화와 함께 전통적인 행정규제제도를 대폭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와 같은 자율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은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국가와 사회와의 협동을 실현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¹⁴⁾

12) 勢一智子, 前掲論文, 254頁.

13) 勢一智子, 前掲論文, 255頁.

14) 勢一智子, 前掲論文, 256頁.

3) 협동시스템의 전개

정보공유에 의해 자율과 타율이라는 형태에서의 긴장관계만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각 주체가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의해 공통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공통목표인 환경보호목적실현을 위한 협동이 행해지는 것도 기대된다.¹⁵⁾

이른바 협동의 원칙(Kooperationsprinzip)은 환경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바, 여기에서는 행정과 사업자에 더하여 시민도 협동의 주체로서 환경정책목적의 실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협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가를 통한 연대감의 강화가 불가결하며, 그것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또한 협동주체간의 정보상호공유의 과정은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장으로도 될 수 있다.

2.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찍이 기업은 소비자수요의 동향을 마케팅 리서치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시장에 보내는 것만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품개발·판매전략의 구축에 있어서도 환경문제를 고려에 넣을 필요성은 거의 없었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영자는 경영의 수탁자로서 주주를 위해 기업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으로써 수탁책임을 다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심각한 환경문제가 노정되고 지구환경의 격변, 자원의 고갈문제 등 시민사회에 불안요인이 증대하면,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이념에 향하여 기업은 이윤의 추구하고 동시에 환경보호와의 조화가 중요한 경영과제로 되어 왔다.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컨셉트에 있어서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효과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책정하여 환경활동과 그 성과를 사회에 대해 계속해서 발신해 가는 것이 경영조건으로 되고 있는 것은 명확할 것이다. 즉, 환경보전상의 중요한 책무를 지고 기술혁신·환경활동을 담당해 왔던 기업은 이제 그 이니셔티브를 시민의

15) 勢一智子, 前掲論文, 256頁.

손(소비자)에 물려주고, 그들의 평가를 얻지 않고서는 기업의 유지·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기업과 시민간에 환경커뮤니케이션이 필수로 되는 것은 현대의 환경문제가 다양하고도 복잡한 요소를 가지는 것에서 환경활동을 일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위험성에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기업은 양자의 인식의 차이를 매우고 사업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ikokommunikation)이 중요하게 된다.¹⁶⁾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미부여가 가능하지만,¹⁷⁾ 현재 CSR은 반윤리적 활동·반사회적인 행위·법령위반행위 등을 억지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대응·활동에 의해 기업가치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한, 자주성을 본질로 하는 각 기업이 제정하는 소프트 로 (soft law)로서의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¹⁸⁾ CSR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환경CSR이 중시되는 이유의 하나로서 환경문제가 가지는 「불가역성」·「불확실성」의 고려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해결을 미루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환경법을 준수한 기업활동이었다 하더라도 환경보전의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불가역성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한 기업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환경문제가 가지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UN Global Compact¹⁹⁾에서 제시된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분야에서의 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안전영역을 두는 것」·「환경에 대한 영

16) 吉川榮一, 前掲論文, 131-132頁.

17)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에 대해서는, 박선욱·전광석·홍성필·현대호,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국제적 동향 분석」(현안분석 2011-18), 한국법제연구원, 2011. 12. 참조.

18) 吉川榮一, 前掲論文, 130頁.

19) UN 글로벌 콤팩트(United Nation Global Compact)는 1999년 1월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창한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10원칙 중에서 환경측면에 관한 원칙 7 : 「환경문제에의 예방적인 어퍼로치의 지지」, 원칙 8 : 「환경에 더 한층의 책임을 지기 위한 이니셔티브」, 원칙 9 : 「환경상 바람직한 기술의 개발·보급의 촉진」 등이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할 것이다.

향이 불확실한 경우, 활동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⁰⁾

요컨대, 현대의 CSR 활동은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의 마이너스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의 신뢰와 평가의 획득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CSR 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 기업과 시민간을 잇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3. 환경보고(서)의 기능

환경보고서의 기능에는 크게 나누어 외부기능과 내부기능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²¹⁾

(1) 외부기능(커뮤니케이션) - 환경정보의 활용·기업행동의 견제·유도

환경보고서에는 사업자와 사회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①사업자의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에 기초한 정보개시기능, ②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및 ③사업자의 사회와의 ‘서약과 평가’(Pledge and Review)에 의한 환경활동 등의 추진기능이라는 세 가지의 외부기능이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²²⁾

환경정보의 개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지만, 개별법에서 정보개시가 부분적으로 법적 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①은 환경보고를 의무지우는 근거로도 될 수 있다. 이것은 제품등 정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환경보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유용한 환경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환경보고에 의해 얻어진 생의 「사업자(소) 정보」는 그대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에는 적절한 가공과 그것을 하는 인터프

20) 吉川榮一, 前掲文, 133-135頁 및 147頁 참조.

21) 越智敏裕, 前掲論文, 14-18頁; 環境省, 「環境報告ガイドライン ~持続可能な社會をめざして~ (2007年版)」, 11-13頁 참조.

22) 越智敏裕, 前掲論文, 14頁.

리터(interpreter)가 필요한 바, 따라서 우선은 기초적인 환경정보의 개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③은 ①의 정보개시와 함께 CSR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며,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의 행동을 견제하고 기업을 환경배려로 유도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이상적으로는 기업이 그 환경배려행동에 관하여 윤리적 칭찬(기업이미지의 향상)뿐만 아니라 투자나 제품·역무의 구입이 증대한다는 형태로 사회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로부터 그 이상의 환경배려행동을 기대받고, 기업이 그것에 응하여 대응한다는 이상적인 피드백기능이다. 이것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환경보고가 가지는 직접적인 기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기업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며, 내부기능과 융합되어 있다.²³⁾

요컨대, 환경보고의 외부기능이란 환경정보의 활용이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업행동의 견제와 환경배려에의 유도도 이것에 포함된다.

(2) 내부기능 - 환경경영의 채용·환경배려의 실행

환경보고서는 말하자면 환경경영의 상황과 성과를 보고하는 수단이므로 환경경영과 환경보고(서)는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²⁴⁾ 환경보고서에는 사업자 자신의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환경배려 등의 대응을 촉진시키는 내부기능으로서 ④자신의 환경배려 등의 대응에 관한 방침·목표·행동계획 등의 책정·재검토를 위한 기능 및 ⑤경영자나 종업원의 의식부여, 행동촉진을 위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²⁵⁾

이것들은 외부기능의 전제로 되는 중요한 기능인 바, 환경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고해야 할 내용을 수집·형성할 필요가 있다. 보고기업은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네가티브정보를 줄이려고 하고, 보고하고 싶은 포지티브정보를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보고한다」라는 목적을 위해 기업은 환경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게다가 자발적으로 환경배려행동을 취하는

23) 越智敏裕, 前掲論文, 15頁.

24) 國部克彦·伊坪徳宏·水口剛, 「環境經營·會計」, 有斐閣, 2007, 192頁.

25) 越智敏裕, 前掲論文, 15頁.

(환경경영을 행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는 까닭이다.²⁶⁾

요컨대, 환경보고의 내부기능이란 기업에 대해 환경정보를 수집·형성하는 고안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환경배려를 계획·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적으로 개선해 가는 환경경영을, 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경영 체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EMS)을 채용하게 하는 것이다.²⁷⁾ 따라서 환경보고의 내부기능이란 기업의 환경배려행동의 촉진이며, 그 전제로서 환경경영이 채용되는 것이다.

(3) 외부기능과 내부기능의 관계

확실히 환경보고의 의무부여는 외형적으로는 외부기능의 ① 내지 ②를 제도화하는 것이지만, 환경정보의 제공이 바로 환경보전효과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후술하는 일본의 「환경배려촉진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환경배려의 촉진이며(동법 제1조), 오히려 내부기능이야말로 환경보고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조차 말할 수 있다. 환경정보의 제공에 의해 외부자인 투자가, 소비자, 정치부문 등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환경면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외부자에 의한 환경보고의 활용이라는 2차적 내지 부차적인 효과이다. 외부기능은 내부기능의 발현결과를 사회에 있어서 활용하는 것이며, 내부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피드백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²⁸⁾

중요한 것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환경배려 행동을 취하는 것이며, 외부기능은 내부기능의 결과로서 존재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에 대해 환경배려의 유인을 줄 수 있는 내부기능

26) 越智敏裕, 前掲論文, 16頁.

27) EMS의 규격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ISO 14000s 및 에코액션(Eco-Action) 21이 있지만, 물론 이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 기업이 경영방침, 업태, 규모, 종업원 수, 사업전략이나 기업풍토에 맞추어 자신의 EMS를 구축하면 좋을 것이다. 환언하면 현재 환경보고를 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는 EMS가 적어도 충분한 형태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환경보고에 관해서는 그 「독자」를 누구로 상정하는가 라는 것이 종종 문제되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종업원이나 그 가족 및 경영자도 중요한 독자로 된다. 이해관계자로서 외부의 관계자도 중요하지만, 환경보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자는 기업내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越智敏裕, 前掲論文, 16-17頁.

28) 越智敏裕, 前掲論文, 17頁.

을 환경보고의 기능으로서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²⁹⁾

요컨대, 환경보고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기대되는 기능은 기업이 환경배려행동을 취하고 그것을 평가하여³⁰⁾ 소요의 조직·체제를 정비한다는 내부기능과, 보고된 환경정보를 기초로 당해 기업의 행동을 견제·평가하면서 이해관계자가 당해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일정한 행동을 취하는, 즉 환경정보를 활용한다는 외부기능이다. 양 기능은 각각에 서로 피드백하는 형태로 된다. 기업내부에서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았던 환경정보가 새로이 파악·평가되고, 공개되는 것에 의해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에 대한 환경배려행동을 동기지우는 수단으로서 환경보고는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³¹⁾

Ⅲ. 「환경배려촉진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1. 서

오늘날의 환경문제에 적확히 대응하여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해가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주적·적극적인 환경배려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의 환경배려의 수단 중에서도 환경보고서는 사업자가 사회에 대해 스스로 개방한 창문이라고 할 만한 것이며, 사업자와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29) 물론 외부의 감시와 평가에 의해 내부기능이 크게 높아진다는 중요한 의미를 외부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환경보고제도의 검토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내부기능을 주로 하고 외부기능을 종으로서 위치지워야 하며, 외부기능에 과도하게 주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되고 있다(越智敏裕, 前掲論文, 17頁).

30) 이것은 환경회계·환경성과지표(Environmental Performance Indicator : EPI)·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 LCA)에 의해 행동결과를 파악·평가하여 장래의 행동에 피드백하는 자기평가의 과정이다. 「환경회계」란 기업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여 사회와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환경보전에의 대응을 효율적이고 또한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과 그 활동에 의해 얻어진 효과를 인식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화폐단위 또는 물량단위)으로 측정하여 전달하는 고안을 말한다. 環境省, 「環境會計ガイドライン 2005年版」, 2頁.

31) 越智敏裕, 前掲論文, 17-18頁.

담당하는 것이다. 환경보고서의 보급에 의해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대응하는 사업자가 관계자의 이해나 협력을 얻기 쉽게 되고, 환경배려의 대응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적극적인 환경배려의 대응을 넓혀 가기 위해서는 환경보고서에 관하여 그 신뢰성, 비교용이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환경보고서의 대응의 저변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로 되고 있다.

2004년 6월에 제정(법률 제77호)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보의 제공의 촉진 등에 의한 특정사업자 등의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즉 「환경배려촉진법」은 이와 같은 정세에 비추어 환경보고서의 보급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특정의 공적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 환경보고서의 작성을 의무지우는 것 등에 의해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³²⁾

동법은 총 7장 26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하에서는 우선 동법의 제정배경에 관하여 간략히 검토한 후 그 주요내용에 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2. 제정배경³³⁾

(1) 자주적·적극적인 환경배려의 대응의 가일층의 추진과 저변의 확대

오늘날의 환경문제에 적확히 대응하여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에 의한 자주적·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사업자에 관해서는 단지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대

32) 大場寛之,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を図る”, 『時の法令』 1731号, 2005. 2, 33頁.

33) 일본에 있어서 환경보고서 등 사업자의 환경배려의 대응을 진척시키려고 하는 수법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2000년 12월에 책정된 환경기본계획에도 「사회경제의 환경배려를 위한 고안의 구축에 향한 대응」 속에서 「정보적 수법」 및 「질차적 수법」으로서 위치지워지고, 그 개발과 보급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3개년계획(재개정)」(2003년 3월 각의결정)에서도 환경보고서 등의 정보적 수법을 활용한 자주적 대응의 추진이 위치지워져 있다.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의 책정 등에 의해 그 추진이 도모되어 왔지만, 환경배려에의 대응을

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창의고안에 의해 환경부하의 삭감에 대응하는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사업자의 자주적·적극적인 환경배려의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³⁴⁾

환경배려에의 대응에 관해서는 사업자도 사업을 제약하는 조건으로서 이것을 막아내는 인식으로부터 업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나아가서는 향후의 사업자의 발전의 열쇠로 되는 과제로 이해하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사업자의 환경정보에 대한 사회나 시장에서의 요청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자본시장에서는 최근의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나 투자가의 관심의 고양과 사업자의 자주적·적극적인 환경배려에의 대응의 추진을 받아 적극적으로 환경배려에 대응하고 있는 사업자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에코펀드 등의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 SRI)의 대응이 진전되고 있으며,³⁵⁾ 소비자시장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사업자에 의한 그린구입이 추진되고 있다.³⁶⁾

이와 같이 사업자에 있어서의 환경배려의 대응은 최근 크게 진전되고 있지만, 사업자 전체로서 본다면 아직도 일부의 의식이 높은 사업자의 대

더한층 촉진하기 위한 방책에 관하여 검토를 행하기 위해 2003년 9월 24일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 총합정책부회에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의 촉진방책에 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중앙환경심의회 총합정책부회에서는 소요의 수정을 한 다음 이것을 적절한 것으로서 받아들였다. 環境省 中央環境審議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方策の在り方について (意見具申)」, 5-6頁 참조.

34) 中央環境審議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方策の在り方について (意見具申)」, 7頁. 한편, 일본에 있어서 사업자의 환경배려의 대응상황을 본다면, ISO 14001 인증 사업소의 증가 등 환경경영시스템의 도입의 진전, 환경회계의 대응의 진전, 환경보고서의 작성·공표사업자의 증대, 환경성과의 파악·평가의 대응의 진전, 환경라벨에 의한 제품정보제공의 진전, 제품에 관련한 전과정평가의 실시, 환경적합설계의 실시 등을 통해서 자주적·적극적으로 환경배려를 사업활동에 포함시키는 사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中央環境審議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方策の在り方について (意見具申)」, 7頁 참조.

35) 일본에서는 1999년부터 증권회사 등이 에코펀드의 판매를 개시한 이래 펀드 수도 계속해서 증가해 왔는 바, 2003년 12월말 시점에서의 순자산액은 약 850억 엔이 되고 있는 등 그 대응이 확대되어 왔다(中央環境審議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方策の在り方について (意見具申)」, 8頁).

36) 中央環境審議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方策の在り方について (意見具申)」, 8頁.

응에 그치고 있는 감이 있다. 향후 더욱 폭넓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의 대응을 한층더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시책의 연장선상의 대응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향후 사업자의 환경배려의 대응의 저변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주적·적극적인 대응이 사회나 시장 속에서 명확히 됨과 동시에, 그러한 대응이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구체적인 행동에 반영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상에 있어서는 자주적·적극적인 환경배려의 대응을 중요한 것으로서 인식하는 의식은 공통의 것으로 되고 있지만, 시장이나 사회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그러한 환경배려의 대응에 대한 고려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실제의 행동에는 반드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 즉, 거래처, 투자가, 소비자, NPO 등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사업자의 환경배려의 대응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응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환경배려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업자의 환경배려의 대응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측에서 사업자의 환경배려의 대응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다.³⁷⁾ 그리고 이것이 사업자에 의한 환경배려의 대응이 충분하게는 보답 받지 못하는 것의 원인이 되고 있다.³⁸⁾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시장,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인 환경보

37) 즉, 여러 이해관계자가 사업자의 환경배려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더라도 사업자의 환경정보에 관해서는 비교용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정보가 반드시 충분히 시장이나 사회에 제공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환경배려의 대응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있다. 한편, 소비자도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관련된 중요한 입장에 있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환경에의 대응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신뢰관계를 쌓아 가는 것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환경에의 배려에 관한 소비자에의 정보의 제공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한편, 소비자에의 계발을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있어서 ISO 14001 등의 환경경영시스템, 환경회계, 환경보고서 등 전문분화된 개별의 환경배려 수단의 활용은 인적, 비용면 등에서 부담이 커서 그 대응은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다. 게다가 그러한 대응이 보답 받는 것과 같은 사회나 시장에 있어서의 평가에 결부되는 고안이 없다. 中央環境審議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方策の在り方について (意見具申)」, 12-13頁 참조.

38) 中央環境審議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方策の在り方について (意見具申)」, 11頁.

고서가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그 보급촉진과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해 가는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³⁹⁾

(2) 국제적인 동향에의 대응

이와 같은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환경배려에 향한 대응은 국제적인 조류가 되고 있으며, 2002년에 개최된 WSSD(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소비형태의 변경」이라는 사항이 논점의 하나로 문제삼아졌다.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에의 대응의 조류에 있어서 특히 EU에 있어서의 대응은 각종의 방침의 책정이나 회원국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실천적, 전략적, 체계적으로 정리된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⁴⁰⁾

EU 등 외국에서도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이나 환경보고서의 작성·공표를 통한 환경배려의 대응이 전개되고 있으며, 게다가 이러한 대응을 진척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의 제도적 틀의 정비(EU의 EMAS제도, 환경보고서의 책정·공표의 의무부여 등)도 진전되고 있다. 또한 ISO나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등의 국제적인 민간단체 등에 의해 환경경영시스템, 환경회계, 환경보고서 등의 보급촉진에 향한 다양한 의론과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CSR에 관해서도 EU에서 CSR에 관한 기본방침이 책정되는 등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외에, ISO 등에서도 의론이 행해지고 있다.⁴¹⁾

요컨대,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의 촉진이라는 지구규모의 과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정합성의 확보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본 으로서는 글로벌한 고안을 구축해 감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⁴²⁾

39) 中央環境審議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方策の在り方について (意見具申)」, 12頁.

40) 中央環境審議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方策の在り方について (意見具申)」, 9頁, 14頁 참조.

41) 中央環境審議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方策の在り方について (意見具申)」, 10頁.

42) 中央環境審議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方策の在り方について (意見具申)」, 19頁.

3. 주요내용

(1) 총칙 : 목적과 국가 등의 책무 등(제1조~제5조)

1) 동법의 목적(제1조)

환경배려촉진법은 사업활동에 관련한 환경배려 등의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해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특정사업자에 의한 환경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련한 환경보전에 관한 배려가 적절하게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요컨대, 환경과 경제가 일체적으로 향상되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진행해가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주적인 환경배려의 대응이 사회나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되는 것을 통해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법은 특정사업자에 의한 환경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의 조치, 환경보고서의 이용 등에 관한 각 주체의 책무의 명확화 등에 의해 사업자의 환경배려의 대응이 사회나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환경과 경제의 통합에 연결시켜가기 위한 조건정비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⁴³⁾

2) 개념정의(제2조)

동법 제2조에서는 「환경배려 등의 상황」, 「환경정보」,⁴⁴⁾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⁴⁵⁾ 및 「환경보고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환경배

43) 大場寛之, 前掲論文, 34-35頁.

44) 사업활동에 관련한 환경배려 등의 상황에 관한 정보와 제품 등에 관련한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동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사업활동에 관련한 환경배려 등의 상황에 관한 정보」란 사업활동에 착안하여 사업활동에서 행해지는 환경배려의 대응 등의 상황을 말하고, 「제품 등에 관련한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정보」란 제품, 서비스 등이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에 이바지하는 것인 취지의 정보, 구체적으로는 재생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적은 것, 사용후 재사용하기 쉬운 것,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에 이바지하는 제품을 이용한 서비스인 것 등의 정보를 말한다.

45) 환경에의 부하를 저감하는 것, 양호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 그 밖의 환경의 보전에 관한 활동이 자주적으로 행해지는 사업활동을 말한다(동조 제3항).

려 등의 상황」이란 환경에의 부하(환경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에의 부하를 말한다)를 저감하는 것, 그 밖의 환경의 보전에 관한 활동 및 환경에의 부하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활동의 상황을 말한다(동조 제1항). 다음으로, 동법에서 「환경보고서」라 함은 특정사업자⁴⁶⁾ 등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연도 또는 영업연도에 있어서 그 사업활동에 관련한 환경배려 등의 상황(그 사업활동에 수반하는 환경에의 부하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그 작성에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의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동조 제4항). 이와 관련하여, 환경보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명칭의 여하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며, CSR보고서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연도 등에 있어서 그 사업활동에 관련한 환경배려 등의 상황 등을 기재한 문서인 한 환경보고서에 해당한다.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제3조)

국가는 자신의 환경배려 등의 상황을 공표함과 아울러 사업자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의 촉진, 사업자 또는 국민에 의한 환경정보의 이용의 촉진, 그 밖의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1항).⁴⁷⁾ 반면에, 동조 제2항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책

46) 동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특정사업자」란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과의 관련성의 정도, 그 조직의 태양,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는 환경에의 부하의 정도, 그 사업활동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은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환경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의무를 지는 바, 2010년 4월 1일 현재 독립행정법인 31개, 국립대학법인 60개, 기타 3개가 정령에 의해 특정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특정사업자에 관하여 환경보고서의 작성·공표가 의무지워져 있는 취지는 국가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관하여 솟선수범의 관점에서 환경보고서의 작성을 의무지우는 것에 의해 민간사업자에게 환경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등의 대응이 과급되는 것 등을 기대하는 것이다. 中央環境審議會總合政策部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關する小委員會, 「環境配慮促進法の施行狀況の評價・檢討に關する報告書」, 2009年 3月, 3頁 참조.

47)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란 환경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의 책정이나 환경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 사업자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을 촉진하는 시책, 환경보고서의 열람 등을 행하는 민간단체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업자 또

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의 경우와 달리 「노력규정」으로 되어 있다. 즉, 지방공공단체는 자신의 환경배려 등의 상황을 공표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그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른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⁴⁸⁾

게다가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중소기업자의 사무부담 등에 배려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4)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제4조, 제5조)

우선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관하여 환경정보의 제공을 행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동법 제4조). 또한 사업자는 물론 국민도 투·융자나 제품·서비스의 구입에 있어서는 환경정보를 감안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동법 제4조·제5조). 이것에는 특히 사회적 책임투자의 보급확대의 진행 등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⁴⁹⁾

(2) 국가 등에 의한 환경배려 등의 상황의 공표(제6조, 제7조)

동법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환경배려 등의 상황의 공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조에 의하면 국가, 즉

는 국민에 의한 환경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 환경보고서의 제3자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등을 말한다.

48) 예를 들면 지방공공단체에서는 그 구역의 환경배려의 대응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있고, 이러한 시책이 지역에 있어서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해당한다.

49) 大場寛之, 前掲論文, 37-38頁 참조.

요컨대, 환경배려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사업자 및 개인이 투자선 기업의 환경배려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투자를 행함으로써 환경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가도 안정됨과 아울러 브랜드 파워도 향상된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을 통하여 환경배려의 상황에 따라 기업을 선별하는 동향이 일반화되면,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환경배려행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하여 이른바 「사회적 책임투자」는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는, 中央環境審議會總合政策部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小委員會, 前掲 報告書, 27-34頁 참조.

각성각청의 장(재정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성각청의 장을 말한다)은 매년도 당해 연도의 전년도에 있어서 그 소관사무에 관련한 환경배려 등의 상황을 인터넷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⁵⁰⁾ 요컨대, 국가는 사업활동의 주체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을 촉진함에 있어서는 국가 자신이 솔선하여 사업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활동에 환경배려를 포함시키고 대응상황을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활동은 사업활동의 주체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활동 이외에도 시책분야를 포함하여 소관사무전반의 활동에 환경배려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⁵¹⁾

한편, 지방공공단체에 관해서는 그 자주성 등을 중시하여 자신의 환경배려 등의 상황의 공표에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7조).

(3) 사업활동에 관련한 환경배려 등의 상황의 공표(제8조~제11조)

1) 환경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제8조)

동법 제8조에서는 환경대신 등의 주무대신으로 하여금 환경보고서에 기재하거나 또는 기록해야 할 사항 및 그 기재 또는 기록의 방법(이하에서는 「기재사항 등」이라 한다)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1항). 주무대신이 기재사항 등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해야 할 기재사항 등의 안에 관하여 사업자, 학식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 협의회, 그 밖의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재사항 등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것을 공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제3항).

요컨대, 「환경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이란 환경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기재의 방법을 정한 것을 말하는 바,⁵²⁾ 환경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50) 환경성에서는 각성각청의 공표상황 및 공표시기에 관하여 매년 확인함과 아울러, 각성각청이 환경배려 등의 상황을 공표하고 있는 웹사이트에의 링크를 일람화하고 있다. <http://www.env.go.jp/policy/hairyō-law/article6/jokyo> 18.html.

51) 大場寛之, 前掲論文, 38頁.

52) 동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는 「환경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으로서는 ① 사업활동에 관련한 환경배려의 방침 등, ②주요한 사업내용, 대상으로 하는 사업연도 등, ③사업활동에 관련한 환경배려의 계획, ④사업활동에 관련한 환경배려의 대응의 체제 등, ⑤사업활동에 관련한 환경배려의 대응의 상황 등, ⑥제품 등에 관련

사항 등이 명확화됨으로써 사업자가 환경보고서의 작성에 대응하기 쉽게 되고, 환경보고서의 작성기업의 저변의 확대에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⁵³⁾

2) 환경보고서의 공표 등(특정사업자) (제9조)

특정사업자는 사업연도 또는 영업연도마다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바(동조 제1항), 특정사업자가 환경보고서를 공표할 때에는 기재사항 등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노력하는 외에, 이른바 환경보고서의 자기평가나 제3자심사 등에 의해 환경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조 제2항).

이것은 국가에 준하는 일정한 공적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관해서도 사업활동에 환경배려의 부족이 없도록 솔선한 대응이 필요하며, 또한 환경보고서의 보급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모델」로서 솔선하여 환경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를 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다.⁵⁴⁾

3) 환경보고서의 심사에 있어서의 준수사항(제10조)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사업자에 관해서는 동법 제9조 제2항에서 환경보고서의 신뢰성향상의 조치의 예시로서 제3자심사를 받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것에 대응하여 환경배려촉진법 제10조에서는 특정사업자에 관하여 제3자심사를 행하는 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특정사업자의 환경보고서의 제3자심사를 행하는 자는 독립한 입장에서 심사를 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환경보고서의 심사의 공정하고도 정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와 종사자의 자질의 향상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동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환경보고서 등의 심사수법을 시사하고 심사의 공평성, 투명성, 독립성,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효율적·유효한

한 환경배려의 정보, ⑦기타로 되어 있다. 內閣府·總務省·財務省·文部科學省·厚生勞動省·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國土交通省·環境省告示 1号 (2005年 3月 30日) 참조.

53) 大場寬之, 前掲論文, 39頁.

54) 大場寬之, 前掲論文, 39頁.

심사를 실현함으로써 환경보고서 등의 신뢰성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보고서의 심사업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이 공동으로 2005년 6월에 「일본환경정보심사협회」를 설립하였으며, 게다가 동 협회는 2007년 8월 유한책임중간법인 「Sustainability 정보심사협회」(이하에서는 「협회」라 한다)로 되어 있다. 동 협회는 ①심사기관 및 심사인의 인정·등록, 윤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⁵⁵⁾ ②심사에 관한 기준 등의 책정, ③환경보고서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④심사인의 연수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 있다.⁵⁶⁾

4) 환경보고서의 공표 등(민간의 사업자) (제11조)

우선 대기업자(중소기업자 이외의 사업자)를 말하며 특정사업자를 제외한다는 환경보고서의 공표, 그 밖의 그 사업활동에 관련한 환경배려 등의 상황의 공표를 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그 공표를 행할 때에는 환경보고서를 기재사항 등에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 등에 의해 환경보고서 등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⁵⁷⁾⁵⁸⁾

55) 우선 심사기관의 인정에 관해서는 공평성을 확보하는 체제, 필요한 전문지식·실무경험을 가진 충분한 수의 심사인을 가질 것, 품질관리의 실시, 다른 업무활동과의 구분관리 등의 요건에 관하여 심사를 행한 후에 인정이 행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심사인의 인정에 관해서는 협회가 실시하는 필요한 지식에 관한 연수 및 시험을 거쳐 실무경험을 포함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 필요한 지식으로서 ①경영에 관한 지식, ②CSR에 관한 조직의 경영문제와 그 대응책에 관한 지식, ③사회·경제·환경에 관한 조약 및 국내법령에 관한 지식, ④지구환경, 인간사회 및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관련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와 그 대응책에 관한 지식, ⑤심사·감사에 관한 지식으로 되어 있다.

56) 中央環境審議會總合政策部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小委員會, 前掲報告書, 13頁 참조. 한편 환경보고서의 제3자심사의 더 한층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Sustainability 정보심사협회에 의해 자주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환경보고서의 인정·등록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위치를 부여하는 것에 의해 그 신뢰성의 더 한층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57) 이와 같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환경보고서의 작성·공표를 의무지우는 대신에 노력의무를 과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의 창의고안에 의해 행해야 할 환경보고서의 작성·공표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동법에서는 국가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여 사업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기업자에 의한 환경보고서의 작성비율 및 작성수에 관한 상세는, 中央環境審議會總合政策部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小委員會, 前掲報告書, 6頁 이하 참조.

58) 대기업자에 의한 환경보고서의 신뢰성의 향상을 위한 대응으로서 제3자심사, 제3

한편, 중소기업에 관해서도 환경정보의 제공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환경보고서의 공표를 행하도록 하였을 경우의 사무부담 등 대기업과 동렬에서 논할 수 없는 사정에 적절히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환경보고서 등의 공표 및 신뢰성향상의 노력의무를 과하는 대신에, 오히려 국가로서 중소기업자가 환경배려의 대응의 공표를 용이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대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⁵⁹⁾

자의견, 자기평가 등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신뢰성향상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증가경향에 있지만, 환경보고서의 활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더 한층의 신뢰성향상조치의 실시가 요구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요컨대 환경보고서의 「신뢰성」에 관하여 정확성(기재정보가 정확한 것) 및 망라성(중요한 정보가 빠짐 없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한다면, 제3자심사는 정확성과 망라성의 양쪽을 보증하는 것이다. 제3자의견은 정확성과는 관계 없이 중요한 정보의 망라성 등에 관하여 의견이 기술되는 것이 많다. 자기평가는 정확성과 망라성의 양쪽을 체크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자기체크이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높음은 제3자심사, 제3자의견, 자기평가의 순으로 되지만, 그 순서로 비용도 들게 된다. 어떠한 신뢰성향상조치가 적당한가는 환경보고서작성의 성숙도, 환경보고서작성의 목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고, 또한 복수의 방법을 조합시키는 것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성에서는 신뢰성향상조치의 적절한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 관하여, 어떠한 신뢰성향상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각각의 조치의 조합을 포함하여 사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보고서의 작성·공표의 더 한층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고서를 작성·공표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예: 입찰의 참가 자격에 관하여 환경보고서의 작성·공표 등 기업의 환경배려를 고려하는 그린입찰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도 향후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中央環境審議會總合政策部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關する小委員會, 前掲 報告書, 9-12頁 참조. 또한, 환경보고서의 제3자인증의 현상과 법적 책임의 문제에 관해서는, 吉川榮一, “環境報告書の第三者認證と法的責任”, 『上智法學論集』 第47卷 2号, 2003, 19頁 이하 참조.

- 59) 大場寬之, 前掲論文, 40頁. 구체적으로는 환경성에서는 중소기업용의 간이한 환경배려의 대응상황의 공표방법 등을 제공하는 「에코액션 21」의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어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인증·등록제도의 운용은 (재)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지속성센터가 실시하고 있다. 에코액션 21의 특징은 환경경영시스템, 환경보전의 대응(적어도 CO₂배출량, 폐기물배출량, 물사용량의 삭감에 향한 대응), 환경보고의 3요소를 통합한 가이드라인인 것이라 할 수 있다. 中央環境審議會總合政策部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關する小委員會, 前掲 報告書, 15-17頁 참조.

(4) 제품 등에 관련한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2조)

동법 제12조에서는 사업자가 그 제품 등이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에 이바지하는 것인 취지 등 그 제품 등에 관련한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보고서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제공에 더하여, 개별의 제품 등에 관한 환경라벨 등에 의한 정보제공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⁶⁰⁾

(5) 환경정보의 이용의 촉진 등(제13조)

국가는 환경보고서의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보고서의 수집, 정리 및 열람의 업무를 행하는 민간단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행하는 외에(동조 제1항),⁶¹⁾ 투자, 제품 등의 이용,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 또는 국민에 의한 환경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언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⁶²⁾

(6) 보칙 및 벌칙(제14조~제16조)

환경배려촉진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주무대신 등,⁶³⁾ 경과조치 및 벌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벌칙과 관련하여 특정사업자가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고서의 공표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공표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사업자의 임원에게 20만엔 이하의 과료가 과해진다.

60) 大場寛之, 前掲論文, 41頁.

61) 환경보고서의 수집·정리·열람을 행하는 민간단체의 현황에 관해서는, 中央環境審議會總合政策部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關する小委員會, 前掲 報告書, 21頁 참조.

62) 사업자에 의한 제품 등에 관련한 환경정보의 제공 및 국가에 의한 환경정보이용촉진 조치의 실시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는, 中央環境審議會總合政策部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關する小委員會, 前掲 報告書, 23-26頁 참조.

63) 동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배려촉진법에 있어서 주무대신이란 내각총리대신, 총무대신, 재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환경대신 및 특정사업자를 소관하는 대신을 말한다.

(7) 소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환경배려촉진법은 국가에 대해서는 환경배려 등의 상황을 공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음(동법 제6조)에 반하여,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는 그 자주성을 중시하여 환경배려 등의 상황의 공표에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또한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보고서의 작성·공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동법 제9조 제1항), 민간의 사업자인 대기업자에 대해서는 환경보고서의 공표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동법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환경배려의 대응의 공표를 용이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국가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대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1조 제2항). 요컨대 환경배려에의 대응, 즉 환경보고서의 작성·공표의무와 관련하여 환경배려촉진법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배려촉진법 하에서의 환경보고서에 관해서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즉, ①환경보고서의 작성비율이 낮은 것, ②환경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것, ③환경정보의 비교가능성을 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환경배려촉진법과 같은 노력의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경보고를 의무지워야만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⁶⁴⁾ 이와 같이 기업에 대하여 환경보고를 의무지우는 근거는 기업의 설명책임⁶⁵⁾이며, 환경보고의 의무부여는 환경정보인프

64) 越智敏裕, 前掲論文, 30-32頁; 北村喜宣, 「環境法」, 弘文堂, 2011, 155頁; 中央環境審議會總合政策部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小委員會, 前掲 報告書, 9頁 참조.

65) 즉, 기업은 그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공재인 환경을 이용하여 큰 환경부하를 주고 있고, 그와 같은 기업활동이 범위나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총체로서 여러 가지의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문명의 존속에조차도 위협을 주고 있는 이상, 적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부하를 주고 있는 기업(대기업자)에는 설명책임이 있고, 적어도 사업활동에 수반하는 환경정보를 일정한 범위에서 수집·형성하고 그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越智敏裕, 前掲論文, 23-24頁; 環境省, 「環境報告ガイドライン」, 11頁).

한편, 기업의 환경정보에 관해서는 시민의 기업에 대한 개시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학설도 유력하다. 그 근거로서 환경권 내지 환경 파트너십을 말하는 것 및 사회와의 신탁관계에 기초하는 기업의 환경관리보전의무를 말하는 것이 있지만, 이 개시청구권의 뒷받침으로서도 환경보고가 의무지워질 수 있다고 한다(大塚直,

라의 창출,⁶⁶⁾ 환경배려행동의 촉진,⁶⁷⁾ 환경정보의 신뢰성향상 및 외부기능의 향상이라는 법정책상의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되고 있다.⁶⁸⁾

IV. 우리나라 환경법제에 있어서 환경보고제도

1. 개 설

최근에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은 ①환경경영의 기본여건을 조성하는 환경경영 시스템 도입, ②실제 경영과정에서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환경성과평가 및 환경경영기법 도입, ③에코디자인, 환경라벨링 등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중 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외부에 알리는 환경경영기법으로는 환경보고서, 환경회계, 환경성과평가지표개발,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평가 등이 있다.⁶⁹⁾

한편, 본고의 주된 검토대상인 환경성과평가를 통한 환경정보공개, 즉 환경보고(서)는 기업의 환경관리상황을 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는 환경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자 이해관계자의 기업 사회적 환경책임 요구에 대한 보고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직원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관리 대응능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環境法 [第2版]』, 有斐閣, 2006, 110頁; 吉川榮一, “環境リスクと企業に對する情報開示請求”, 145-146頁; 越智敏裕, 前掲論文, 23-24頁 참조).

66) 환경보고의 의무부여는 이제까지 인식 그 자체가 되는 일이 없었던 환경에 관한 정보를 창출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적절한 환경(법)정책을 선택할 시의 기초정보의 형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越智敏裕, 前掲論文, 25頁).

67) 환경보고는 규제적 수법을 보완하는 정보적 수법으로서 환경경영의 촉진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을 변용시킴으로써(환경배려담당자의 설치) 환경배려를 촉진한다는 조직적 수법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越智敏裕, 前掲論文, 25-26頁 참조.

68) 이에 대한 상세는, 越智敏裕, 前掲論文, 24-30頁 참조.

69) 환경부, 『2011 환경백서』, 2011. 12, 148~149쪽.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보고서 작성 이 시도되어 왔으나, 기업마다 작성방식이 달라 체계적인 환경보고서 작 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2000년 12월 환경보고서 작성지침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6개 업종 13개 기업 대상)을 거쳐 2002년 5월에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를 제정·발표하였으며, 환경보고서의 발간·확대를 위한 시범사업(’01.9~’05.4월)을 실시하였다.⁷⁰⁾

또한 2009년도에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녹색기 업⁷¹⁾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기업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 하였다. 특히 2011년 4월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 정을 통해 기업 단위 녹색기업에 대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환 경보고, 즉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녹색기 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업종별·규모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동참을 유도할 수 있 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⁷²⁾

따라서 이하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⁷³⁾상의 녹색기업지 정제도 및 환경보고의무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녹색기업지정의 대상 및 절차 등

(1) 녹색기업지정제도의 의의

녹색기업지정제도란 기업이 환경규제치만 준수하는 규제중심의 환경정 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 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기존의 명령과 통제의 관계에서 벗

70) 환경부, 「2011 환경백서」, 149쪽.

7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시행(’10. 4. 14)으로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이라는 명칭이 “녹색기업”으로 변경되었다.

72) 환경부, 「2011 환경백서」, 153쪽.

73) 기존의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 4. 28.의 개정(2011. 10. 29. 시 행)으로 법률의 명칭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되었다.

어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⁷⁴⁾

전술한 바와 같이, 2011년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녹색기업지정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는 바,⁷⁵⁾ 2012년 3월말 현재 총 210개의 사업소(이 중 중소기업은 총 8개소)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⁷⁶⁾

(2) 녹색기업의 지정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⁷⁷⁾ 이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은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때에 우대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녹색기업의 지정(재지정) 기간은 3년이며(동조 제2항),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74)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제5판]」, 박영사, 2012, 132쪽 참조.

75) 1995년 4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에 제도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01년 5월에는 전국의 환경친화기업이 가입된 전국환경친화기업협회가 구성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ef21.co.kr)가 개설·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3년 5월에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정근거 규정을 일원화하였다. 녹색기업지정제도의 추진경과에 대한 상세는, 환경부, 「2011 환경백서」, 151~153쪽 참조.

76) <http://www.me.go.kr/web/92/me/deptdata/deptDataUserView.do?inpymd=20120406173921&code=A10201&decorator=me&gubun=3> 참조.

77) 녹색기업은 최고경영자의 녹색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 하에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 보고서 10부를 첨부하여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녹색기업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을 기준으로 하며, 녹색기업 지정 시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크게 제조업 심사기준과 비제조업 심사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상세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11-117호(2011. 7. 14) 참조.

한편,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동법 제16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③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⁷⁸⁾

(3) 녹색기업에 대한 특례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일정한 보고·검사 사항을 면제함과 아울러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우대조치가 인정되고 있다.

우선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시설·장비의 검사를 면제하며,⁷⁹⁾ 또한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한다.⁸⁰⁾ 아울러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등 동법 제16조의2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78) 동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22조의7,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9 참조.

79) 다만, ①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과 관련된 조사를 하려는 경우, 또는 ③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6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시설·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7 제2항).

80) 동법 제16조의2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7 제1항 참조.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⁸¹⁾ 또한 녹색기업은 녹색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기업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⁸²⁾

반면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동법 제16조의8에 따른 환경보고의무, 즉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3. 환경정보공개(환경보고)의무 및 환경정보의 검증

(1) 환경정보공개의무의 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서는 녹색기업 등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환경관리활동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의무, 즉 환경보고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은 일정한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이란 ①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④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별표 283)의 기관, 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⁸⁴⁾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2조의9).

81) 동법 제16조의2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8 참조.

82)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8조.

83) 서울메트로 등 총 34개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환경정보공개 의무 대상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8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즉, 관리업체)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이른바 환경보고의무의 대상이 일정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녹색기업과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까지 확대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2) 환경정보공개 의무의 내용 및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녹색기업 등 환경정보공개 의무기관 등이 공개하여야만 하는 환경정보는 ①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②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③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이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항).⁸⁵⁾ 다만, 「부정경쟁

85) 환경정보공개 의무기관 등은 기관특성별 구분에 따라 환경정보를 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 제조분야 환경정보공개 항목(총 27개 : 의무 13, 자율 14)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기업개요 [사업현황(1. 업종, 생산제품, 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 국내외 사업장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2. 환경친화기업, 환경경영대상, 폐기물감축 자발적 협약,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등)],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3.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4.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업무·역할·권한 교육훈련,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자원/에너지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관리현황(5.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 도입, 6. 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7.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8.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신재생 에너지 관리현황(9.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관리현황(10.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1. 온실가스 관리수준(인벤토리, 목표-계획-실적 관리 등) 및 배출량·원단위), 환경오염물질 관리현황(12. 환경오염물질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3. 대기·수질오염·유해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1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15.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16.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17.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원단위, 18.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녹색제품/서비스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19.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20. 녹색제품·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21. 제3자 인증 및 Type II 인증 제품 현황(건수, 매출액 등)), 녹색구매 및 기업간 협력현황(22.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23.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24.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사회/윤리적 책임 [환경법규 준수 현황(25.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환경정보공개(26.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27.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이다. 이와 같은 환경정보공개 항목 가운데 1번, 4~8번, 12~17번, 25번은 의무적 공개항목이며, 나머지 항목들은 자율적 공개항목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공행정분야(의무 8, 자율 11), 교육서비스분야(의무 6, 자율 13), 보건분야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⁸⁶⁾

한편, 환경정보의 공개방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에 따르면 환경정보공개 의무기관 등은 매년 다음 연도 3월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상술한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도록 되어 있다.⁸⁷⁾ 이와 같이 환경정보공개 의무기관 등이 작성·공개한 환경정보를 환경부장관은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⁸⁸⁾

(3) 환경정보의 검증

1)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바, 환경정보의 검증항목은 ①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②작성된 환경정보간의 상충성 여부, ③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관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여부이다(동법 제16조의9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14 제1항). 환경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환경정보공개 항목에 한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의무 7, 자율 12) 및 기타서비스분야(의무 6, 자율 13)의 환경정보공개 항목은 각각 총 19개이며, 기타 산업분야의 환경정보공개 항목은 총 27개(의무 13, 자율 14)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상세는,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11-172호, 2011. 12. 9. 제정) 제3조관련 별표 1 참조.

86)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만, 환경정보공개 의무기관 등은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환경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6조).

87) 다만,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환경정보검증시스템의 등록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에 따라 2011년도의 환경정보는 2012년 9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작성·공개할 수 있다.

88)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3항.

환경정보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청받은 환경정보공개 의무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의9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14 제3항).

2)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운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동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보의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바, 환경정보검증센터는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15 제1항·제2항).

3) 검증심사원의 요건 및 검증심사단의 구성

검증심사원이란 환경정보의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즉, 검증심사원은 학력 및 경력 등이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5조관련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1. 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성평가 도구의 개발 및 적용, 2.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라벨링의 인증취득, 3. 녹색기업의 지정 심사, 4.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컨설팅, 5. 환경관련 설비·시설의 관리 및 운영,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검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5회 이상 검증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검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검증

심사원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심사원의 등록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⁸⁹⁾ 또는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⁹⁰⁾ 또한 검증심사원의 자격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자격기간 동안 검증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검증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검증기관의 장은 환경정보의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기관 직원과 검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검증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하는 바, ① 검증하려는 환경정보공개 의무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 ② 검증하려는 환경정보공개 의무기관 등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자, 또는 ③ 기타 당해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자에 해당하는 검증심사원은 검증심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⁹¹⁾ 환경정보의 검증과 관계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환경정보공개 의무기관 등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환경정보공개 의무의 실효성 확보

우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16조의9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법 제37조 제1항).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15 제3항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 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89)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①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② 검증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여야 한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제2항).

90)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5조.

91)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7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환경정보공개 의무기관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환경정보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사회적 책임투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즉, 금융권에서 지적하는 녹색분야 투자결정에 필요한 기업 환경정보의 접근에 대한 제한성 문제, 요컨대 환경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⁹²⁾

V. 결 어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축, 즉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의 실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기업의 경제활동·기업활동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하고 있는 한편에서, 환경보호수단으로서 정보적 수법의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과 사회간의 환경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최근 주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보고제도」이다. 환경보고는 환경과 경제의

92) 이른바 녹색금융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및 녹색경영 우수 기업 등에 대해 녹색여신·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권의 대표적인 녹색성장 실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금융은 기존 기업 중 녹색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책임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존 기업의 녹색화’를 첫 번째 목표로 하며, 또한 유망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원 절약형·온실가스 감축형 기술 등을 개발·보급하는 ‘미래 산업의 녹색화’를 두 번째 목표로 함으로써 전산업의 녹색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녹색금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된 후 이에 근거하여 2010년 ‘녹색금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녹색금융자원 기업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후속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이란 정부 및 유관기관에 산재한 환경관련 정보 DB의 메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금융기관의 녹색여신·녹색투자시에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함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관해서는, 환경부, 「2011 환경백서」, 159~162쪽 참조.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환경보고서에 의한 정보개시제도는 합리적인 시장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환경활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수단이 된다. 환경보고의 기능에는 환경정보의 활용 및 기업행동의 견제·유도라는 외부기능과 환경경영의 채용 및 환경배려의 실행이라는 내부기능이 있는 바, 양 기능은 각각에 서로 피드백하는 형태로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부기능이야말로 환경보고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조차 말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자주적·적극적인 환경배려의 대응을 더욱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적인 동향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른바 「환경배려촉진법」이 2004년 6월에 제정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의 실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환경보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에서는 특정사업자 등에 대해서 환경보고의무를 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보고에 관하여 노력의무를 과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환경배려촉진법 하에서의 환경보고서에 관해서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즉, ①환경보고서의 작성비율이 낮은 것, ②환경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것, ③환경정보의 비교가능성을 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환경배려촉진법과 같은 노력의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경보고를 의무지워야만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환경보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이것을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16조의8에서는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의무, 즉 환경보고의무를 과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보고의무의 대상이 공공기관은 물론 일정한 민간사업자에게까지 확

대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 환경보고의무를 대상을 더욱 확대함과 아울러 환경정보의 신뢰성 제고에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보고는 환경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점에서 본다면 공개된 환경정보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환경보고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권한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법적 과제”, 『東亞法學』 第53號, 2011.
- 김성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이론적 변천사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1호, 2010.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제5판]』, 박영사, 2012.
- 박선욱·전광석·홍성필·현대호,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국제적 동향 분석』 (현안분석 2011-18), 한국법제연구원, 2011. 12.
- 이동승,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적 규제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9권, 2009.
- 이동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안암법학』 제25권, 2007.
- 이상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공법적 과제”, 『아주법학』 제4권 제1호, 2010.
- 國部克彦·富増和彦編, 『環境報告書の理論と實際』, (財)省エネルギーセンター, 2002.
- 吉川榮一, “環境報告書の第三者認證と法的責任”, 『上智法學論集』 47卷 2號, 2004.
- _____, 『企業環境法 第2版』, 上智大學出版會, 2005.
- _____, “環境リスクと企業に對する情報開示請求”, 『上智法學論集』 第52卷 1·2號, 2008.
- 大場寛之,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を図る”, 『時の法令』 1731号, 2005. 2.
- 大塚 直, “化學物質管理法 (PRTR法)と企業の自主的取組·情報的手法 (上)(下)”, 『法學教室』 322號(2007. 7)·323號(2007. 8).
- 北村喜宣, 『環境法』, 弘文堂, 2011.
- 山本隆司, “事故·インシデント情報の収集·分析·公表に關する行政法上の問題 (上)(下)”, 『ジュリスト』 1307號(2006. 3)·1311號(2006. 5).
- 勢一智子, “環境情報の行政法的機能について —ドイツ環境法における情報のコントロール機能—”, 川上宏二郎先生古稀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 「情報社會の公法學」, 信山社, 2002.
- 水口 剛, “環境監査と環境報告書”, 吉田文和・北畠能房 編, 岩波講座 環境
經濟・政策學 第8卷, 「環境の評価とマネジメント」, 岩波書店, 2003.
- 植田和弘・大塚 直 [監修] / 損害保險ジャパン・損保ジャパン環境財團 [編],
「環境リスク管理と豫防原則」, 有斐閣, 2010.
- 越智敏裕, “環境配慮促進法の可能性 —大企業者に對する環境報告の義務付
けについて—”, 「上智法學論集」第53卷 第1號, 2009.
- 日本環境省 中央環境審議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方策の在り方
について (意見具申)」, 2004. 2.
- 日本環境省, 「環境報告ガイドライン ~持続可能な社會をめざして~ (2007
年版)」, 2007.
- 中央環境審議會総合政策部會 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關する小委
員會, 「環境配慮促進法の施行狀況の評価・検討に關する報告書」, 2009. 3.

<국문초록>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축, 즉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의 실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기업의 경제활동·기업활동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하고 있는 한편에서, 환경보호수단으로서 정보적 수법의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과 사회간의 환경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최근 주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보고제도」이다. 환경보고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즉, 환경보고서에 의한 정보개시제도는 합리적인 시장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환경활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수단이 된다. 환경보고의 기능에는 환경정보의 활용 및 기업행동의 견제·유도라는 외부기능과 환경경영의 채용 및 환경배려의 실행이라는 내부기능이 있는 바, 양 기능은 각각에 서로 피드백하는 형태로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자주적·적극적인 환경배려의 대응을 더욱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적인 동향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른바 「환경배려촉진법」이 2004년 6월에 제정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특정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환경보고의무를 과하고 있고,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보고에 관하여 노력의무를 과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환경배려촉진법과 같은 노력의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경보고를 의무지워야만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환경보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이것을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16조의8에서는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

업”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의무, 즉 환경보고 의무를 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보고 의무의 대상이 공공기관은 물론 일정한 민간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 환경보고 의무의 대상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명실공히 환경보고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녹색기업, 설명책임,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환경보고, 환경정보, 환경커뮤니케이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Reporting -focused on Japan's Environmental Consideration Promotion Act-

Han, Kwi-Hyeon *

In order to address today's environment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the sustainable system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economy and society, which places lower burden on the environment; that is, the virtuous circle for environment and economy should be in place. Given that most environment-related issues result from corporate economic activities,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emphasized, while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method is also highlighted as a mean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environmental reporting scheme receives attention as an environmental communication strategy between companies and society.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under the environmental reporting scheme is useful as a means to facilitate environmental activities as well as to determine if companies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ies.

In Japan, the Environmental Consideration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June 2004, which came into effect on April 1, 2005. The Act stipulates the environmental reporting obligations governing only the State and specific businesses, while it obligat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enterprises to simply make efforts for environmental reporting.

In Korea,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y Support Act regulates the environmental reporting obligations. Under the Article 16-8 of the Act, "green companies under Article 16-2,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companies with large environmental impact", are subject to environmental reporting obligation, such as preparing and disclosing the environment related inform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public institutions as well as specific private enterprises are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reporting scheme.

In conclusion, more social and economic entities shall be included to be subject

* Associate Professor/Dept. of Law,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to environmental reporting so that the environmental reporting scheme plays a key role in creating the virtuous circle for environment and economy.

Key Words : accounta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reen companies, environmental communication, environmental information, environmental reporting, virtuous circles for environment and economy

